

무배당 하나바로 OK 실버보험(갱신형)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 확 인 서

무배당 하나바로 OK 실버보험(갱신형)을 개발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13년 12월 31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 효 성 (인)

#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 무배당 하나바로 OK 실버보험(갱신형)

###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하나바로 OK 실버보험(갱신형)

###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최초계약	7년 만기	전기납	50 ~ 80 세	월납
	10년 만기	전기납	50 ~ 70 세	
갱신계약	5년 만기	전기납	57 ~ 80 세	

###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영업보험료로 한다.

###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가. 금융기관 자동이체 할인

회사는 보험료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로 납부되는 경우, 영업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

나. 유지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할인

회사는 이 보험의 피보험자가 계약일 현재 당사의 유지계약의 피보험자인 경우, 추가로 영업보험료의 0.5%를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

###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표준이율(최초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체결시점,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하며, 이하 “표준이율”이라 한다)로 할인하며, 최대 6개월분(당월분 제외)까지 선납이 가능하다.

###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약관 제 13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회사가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이 보험의 약관 제 13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 13. 기타

가.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1) 계약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보험료납입기일(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납입기일을 준용한다)까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이 계약은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아니한다.

(가) 갱신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입나이가 80세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이 보험의 약관 제8조(계약의 소멸)에 따라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3) ‘(1)’에 따라 갱신되는 계약의 보험기간은 최초계약의 보험기간과 관계없이 5년으로 한다.

(4) ‘(1)’에 따라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 다만, 갱신전 계약의 약관이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약관을 준용한다.

(5)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한다)을 보장개시일로 한다.

(6)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재계산한다.

(7) 갱신되는 계약은 갱신시의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8)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각 해당 내용을 보험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안내한다.

(가) ‘(2)’에 따라 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 사유

(나) ‘(4)’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다) ‘(6)’ 및 ‘(7)’에 따른 갱신계약의 보험료 변동내용

(9)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로 한다.

다. 본 상품은 “무심사” 상품으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 건강상태 등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무심사”란, 의적결함 및 나이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청약서에 건강관련 질문사항이 없으며, 무진단(No Health Question, No Medical Exam)’으로 계약심사과정을 생략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판매시 상품명칭 아래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고지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은 경우, 보다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병기하여 일반상품과의 차이를 안내한다.

마. 판매시 일반 유사상품과의 비교자료를 계약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경우, 표준스크립트 작성시 아래의 문구를 삽입하여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가입시점에 판매되는 유사상품과의 구체적인 보험료 비교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상품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이나 보험심사를 하지 않는 무심사보험입니다.

건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인 경우 통상적인 가입심사절차를 거쳐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다른 상품을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00세인 경우 남자는 00%, 여자는 00%가 저렴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나 추후 보내드릴 상품비교안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사는 「“보험통신판매업무 프로세스 표준rule(모범규준)” 제8조(계약 청약수령 이후 완전판매모니터링 실시) 제1항」에 근거하여 매월 청약된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완전판매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계약인수와 관련된 사항 중 가입한도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가입시 제한될 수 있다.

아.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자. 기초율 변경시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의 인하 또는 보험금을 증액 등을 할 수 있다.

(별첨 제 1 호)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서식

(별첨 제 2 호)

##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 3 호)

##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청약서의 서식